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36
----------	----

제출년월일 : 1998. 1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지방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주요골자

- 휴직에 따른 직권면직규정 보완
- 휴직기간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 근무상한연령 단축

개정조례 (안) : 별첨

신·구 조문 대조표 : 별첨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 58세 " 를 " 57세 "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
직 공무원중 제5조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